

ESL 12/16
Mc. C. II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공청회

- 일시: 1996년 9월 24일(화) 14:00 - 17:30
- 장소: 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강당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집 2층 100-391
TEL 273-9535, 269-2962 / FAX 273-9539

가정법률상담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아동학대예방협회,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인의전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프로듀서연합회, 환경운동연합
간사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 (가톨릭여성의연자리, 경남여성회, 대구여성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제주여민회, 충북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부설가족과성상담소)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가정폭력방지법 시안공청회 자료집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공청회

■

- 일시: 1996년 9월 24일(화) 14:00 - 17:30
- 장소: 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강당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 ◆ ◆ ◆ ◆ 진행순서 ◆ ◆ ◆ ◆ ◆

◎ 개회식

사회... 지은희(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인사말
격려사
경과보고

◎ 주제발표 및 토론

- 주제발표 1 가정폭력 현황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 이상덕 한국여성의전화 부회장
- 2 가정폭력방지법 시안의 내용과 방향
..... 이찬진 변호사
- 3 가정폭력방지법 시안소개
..... 이종걸 변호사

토론 신한국당 ... 권영자 여성위원장
국민회의 ... 신낙균 여성특별위원장
민주당 ... 이미경 의원
의료계 ... 김종구 사당의원 원장
교육계 ... 신연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위원장
사회복지학계 ... 김재엽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정폭력피해당사자

종합토론

◎ 폐회

◆ ◇ ◆ ◇ ◆ 차 례 ◆ ◇ ◆ ◇ ◆

주제발표

1 가정폭력 현황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 이상덕 1
2 가정폭력방지법 시안의 내용과 방향 / 이찬진 15
3 가정폭력방지법 시안소개 / 이종걸 23
<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 31

토 론

1 신한국당 권영자 여성위원장 45
2 국민회의 신낙균 여성특별위원장 47
3 민 주 당 이미경 의원 61
4 의료계 김종구 사당의원 원장 66
5 교육계 신연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위원장 69
6 사회복지학계 김재엽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71

부 록

참고자료 1 :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관련법 조항 73
참고자료 2 : 가정폭력사건일지 78

가정폭력 현황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이 상 덕(한국여성의전화 부회장)

1. 들어가는 말

최근 들어 구타로 인한 아내나 어린이의 사망사건, 지속적인 구타에 시달리던 아내나 청소년들이 가정폭력을 방어하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한국여성의전화에서 가해자를 살해한 피해자들의 정상참작을 재판부에 요청, 구명운동을 벌인 것만도 5건이나 된다. 만약 우리사회가 미리 가정내 폭력에 관심을 갖고 예방과 초기개입을 했더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듯 가정폭력이 방치되는 배경으로는 가부장적 유교 이념의 영향이 매우 크다. 가부장적 유교 이념에서 가족구성원간의 문제는 가장이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는 것은 가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공(公), 사(私)의 이분법적 가정관은 가정폭력문제에 대하여 우리사회나 국가가 공동(공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갖게 한다. 개입을 하더라도 가장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조정 역할만을 담당하는 소극적 태도를 취한다. 현대 선진한국에서 아직도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한다”, “귀한 자식일수록 때려서 키워야 한다” 등 가정을 다스리는 방편으로 가정내 폭력이 있을 수 있다는 사회적 통념들이 아직도 존재하여, 구타자들은 서슴없이 “내 자식 내 아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는 피해자 책임론마저 등장하게 만

들고 있다.

유교이념에 근거한 가부장적 가정윤리와 더불어 경제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력을 가진 가장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성별분업에 근거한 자본주의 경제구조 속에서 사회적 노동의 기회가 구조적으로 차단된 여성들, 그리고 노동할 수 없는 아동과 노인들은 구조적으로 가장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한국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시장노동에서의 여성차별, 가부장적 가정윤리에 의해 사회구조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폭력문제는 개별 가정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분명 사회문제인 것이다.¹⁾

2. 가정폭력 실태

가정폭력(domestic or family violence)에 대해서 문헌상에는 반복적인 정서적, 심리적 학대까지를 포함하나, 실제로는 신체적 폭행(assault)의 심한 공격행위를 나타내는 말로 쓰여지고 있다.(Deschner, 1984), 학대는 개인에게 신체적, 비신체적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 본 글에서는 주로 신체적 학대에 한정에서 가정폭력의 실태를 기술한다.

1) 아내학대

한국에서 아내구타에 대하여 최초로 행해진 한국여성의 전화 (1983)에서는 조사대상자의 42.2%가 결혼후 남편에게서 한 번이라도 구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조사의 경우 서울의 경우 결혼기간 동안 심한 폭력, 가벼운 폭력을 모두 합쳐서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45.8%, 심한 폭력만을 경험한 여성은 9.1%이다.²⁾ 93년 보건복지부 조사통계는 결혼 후 남편으로부터 폭언을 포함한 학대를

1) 이상덕 (1996), 제 2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자료집, p 245 -250

2) 여기에서 가벼운 폭력과 심한 폭력의 구분은 스트라우스(M.A. Straus)의 CTS(Conflict Tactic Scale, 갈등해결척도)에 의거한 것이다. 가벼운 폭력에는 밀치기, 물건 던지기, 따귀 때리기 등이 포함되며, 심한 폭력에는 주먹으로 때리기, 마구 두들

경험한 여성들은 조사대상자(7,500명)의 61%,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는 30.2%로 나타났다. 그 중 심하게 구타당한 경우는 10.1% 이다. 따라서 결혼생활동안 한 번이라도 남편에게서 구타당한 경험을 하는 한국여성의 비율은 대략 40-6%로 볼 수 있으며, 심한 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9-1% 정도가 된다.

아내구타의 심각성은 일반 사회 폭력과는 달리 폭력이 반복적, 주기적인 경우가 적지 않으며, 폭력의 강도가 범죄수준을 넘어선다는 데 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운영하는 '쉼터'를 이용한 여성 143명 중에서 주 1-2회 이상 구타당하는 비율이 무려 42%에 달하고 있으며, 매일 맞는 여성도 15.4%나 되었다. 구타의 유형도 무차별로 구타하거나, 무기나 흉기를 동원하는 경우, 벗기거나 가둬놓고 때리는 경우, 담배불로 지지는 경우 등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접수한 상담사례 중에는 남편에 의해 머리카락 전체를 짧게 잘리운 경우도 있으며, 각목으로 질을 휘저어 목발을 짚어야 했던 여성도 있다. 그밖에 추운 겨울에 발가벗겨 내쫓기거나 강제로 문신을 새기는 경우, 몸에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여성의전화 지부인 부산여성의전화 쉼터 이용자 설문 집계(1993. 9월- 1994. 12월)에 의하면 눈주위가 멍들고 부운 것이 55.7%, 온몸이 멍들었다가 45.7%, 머리를 맞아 정신을 잃었다가 22.9%이다. 그리고 고막이 터졌다가 12.9%, 갈비뼈가 부러졌다가 8.6%, 담배불로 지졌다가 7.1%, 다리가 부러졌다가 1.4%이다. 기타 코뼈 골절, 치아골절, 허리골절이 11%로 심각하다.³⁾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의 경우에도 14.4%의 여성이 반복적으로 구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칼 등의 흉기에 의한 위협이나 폭력의 경우도 4.7%가 경험하고 있다.

아내구타는 장기간에 거친 반복적인 폭력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신체적 손상 이외에 그에 따른 정신적, 심리적 피해도 만만치 않다. 듀스버리(Dewsbury, 1975)는 구타당하는 아내들의 정신적 후기증상으로 우울증이 33%, 성격장애가 33%라고 했으며, 라운스빌(Rounsaville, 1978)은 우울증이 53%, 정신분열증이 12%, 약물중독이 85%라고 했다.

겨 패기, 흉기의 위협이나 사용이 포함된다.

3) 이승렬(1995), 아내구타에 대한 사회적 대책 및 쉼터운영에 대한 비교연구 : 한국과 미국의 경우, p 12

44%만
아내의
중반구타
미네본 1992
50%
미의 중점
90%
가내학대
1
폭력구타
성감

김광일(1985)은 외상후의 스트레스 장애가 80%, 우울증이 10%, 정신신체장애가 4%, 적응장애가 2%, 만성정신분열증이 2%로 진단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체성의 상실과 무기력, 자아개념의 혼란과 자존심의 저하, 맞을 짓을 해서 맞았다는 사회통념의 수용으로 인한 죄책감, 이웃과 친구로부터 고립된 사회생활 부적응, 가출, 자살시도, 자해, 살인 등의 행동장애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⁴⁾ 한국여성의전화 쉼터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극심한 공포감, 우울증, 불만, 대인기피증세, 판단력 약화, 자신감 저하 등을 호소하고 있다.

2) 아동학대

1987년 한국어린이보호회가 11-12세의 아동 1,24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97%의 아동들이 생애에 최소한 1회 이상 그들의 부모나 어른들에 의해서 매를 맞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학회회원 및 소아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490명 가운데 228명이 학대받는 아동을 치료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9년에 1985년-1989년 사이의 서울시립아동상담소에 신고된 122명을 대상으로 조사(유춘식)에서 아동학대의 유형으로 신체적 학대 55.4%, 방임 22.8%, 정서적 학대 7.6%, 아동유기 4.4%, 성적학대 2.2% 등으로 나타났다.

1996년 수원, 안산, 부천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21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윤혜미)에 의하면, 이유없는 감정적인 구타를 약 40%의 아동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사대상자의 85.8%가 잘못했을 때에는 맞는다고 인정하여 체벌이 훈육의 수단으로 널리 퍼져 있으며, 전체 조사대상자의 81.6%는 경한 구타(뺨을 맞거나 부모가 아동에게 던진 물건에 맞거나 빗자루나 회초리로 맞은) 경험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이며, 3.7%는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난다고 하여 어느 정도 관행화되어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 아동의 11.1%는 부모가 아동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치고, 팔을 비튼다든지 머리를 벽에 짚게 하는 등의 정도가 심한 구타 경험이 한 번 이상 있다고 하여 학대행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4) 앞책 P. 13에서 재인용.

구타의 결과 아동이 멍들거나 붓고 상처가 나거나 두통이 나는 상처를 입은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아동은 전체의 48.6%이며 4.6%는 이런 일이 보다 자주 당하며, 10.1% 정도의 아동은 피가 나거나 이빨이 흔들리거나 팔을 뺨 경험, 맞아서 기절하거나 견지못할 정도로 맞는 등 심각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이외에 1995년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사례 중 친족에 의한 어린이 강간이 30.5%나 되어 아동에 대한 근친강간 역시 심각한 상태이다.

3) 노인학대

대검찰청 분석에 의하면, 존속살해의 경우 93년 41건, 94년 41이 발생했다. 존속상해 및 폭행은 93년에 950건, 94년 954건 등 월 평균 80여건이 일어나고 있다. 노인들에 대한 학대는 신체적인 폭력, 감금, 부양거부, 식사제공거부, 신경안정제 강제주입 등 다양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⁶⁾ 199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서울시 60세 이상의 노인 600명을 대상으로하여 노인범죄에 관한 조사를 하였는데, 노인의 유기, 학대에 관련된 문항에서 신체적 폭행을 경험한 경우가 7.5%로 나타났다. 영국의 보건성(1990년 런던의 2개의 지방자치체 대상)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학대실태조사에 의하면 1) 피학대자의 절대수가 여성이며 2) 약 2/3의 피학대자가 일상생활에 있어 상당한 의존상태에 있으며 3) 대부분의 학대자는 노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이며 4) 학대자 자신이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5) 대부분의 학대가 고령기에 시작 6) 육체적인 학대가 전형적이나 반수 이상이 그외의 학대 즉 심리적 학대, 성적학대, 방치, 금전적 학대와 중복하고 있으며 7) 학대는 장기적이며 8) 초기 서비스는 거택을 중심으로 제공되나 많은 경우 장기시설입소가 되며 9) 경우에 따라서는 노인 자신에 의해 서비스가 거부되거나 학대사실을 부정하여 개입이 곤란하기도 하며 10) 전문직의 제휴가 부족하고 학대자나 피학대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없으므로 해서 학대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⁷⁾ 노인들은 가정내 폭력문제를 가정내에서 해결해

5) 윤혜미(1996),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경기여성 토론회 자료집, p.33

6) 서혜경(1995), 한국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전문가 워크숍> 자료집, p.38

7) 이해영(1996),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경기여성 토론회 자료집, p. 43에서 재인용

야 하는 사안으로 보거나 혹은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족구성원간의 관계가 그나마 완전히 깨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어 노인학대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4) 장애인 학대

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에 대해서는 조사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나 앞의 가정폭력 사례와 비슷한 경향을 띤다 하겠다. 한국여성의전화에는 신체적,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기혼여성장애인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정부지원 일시보호시설 조차 여성장애인 입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장애인에 대한 폭력과 성적 학대 역시 진행되고 있음에도 밝혀지는데 어려움이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체적 폭행은 물론 감금, 밥안주기 등의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남성장애인보다도 가정내에서 차별과 학대를 받는 경향이 있으며, 기혼여성장애인의 경우는 남편 뿐 아니라 시집식구에 의한 폭력, 심리적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

3. 가정폭력의 심각성

1) 폭력의 노예화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폭력발생의 지속성과 반복성에 있다. 일반사회에서 타인으로부터 당하는 폭력은 개인에 있어서 일생에 몇 번을 꼽을 정도이지만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장기적으로 반복되어 행해짐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다. 처음 구타를 당할 때에는 당황과 분노로 대들고 싸워보지만 반복적인 구타가 계속될 때는 두려움에 질려 꼼짝 못하고 맞으며, 공포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우선 무조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빈다. 구타가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처음에 이혼을 결심했다가 도 시간이 지남에 양가(兩價) 감정을 갖게 되어 남편이 앞으로는 때리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남편의 공격적인 구타가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빠진다. (차준구, 1986)

2) 폭력의 세대간 전수

1993년 전국 17개 시도의 부모 168명, 아동 170명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학대에 대한 실태조사(이배근)에서는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한 부모는 전체응답자의 75%이었고, 이들 부모들은 거의 자녀를 학대한 부모로 나타났으며, 아내구타는 자녀구타를 동반하고 있었다.⁸⁾ 부모의 폭력관찰이나 성장시 폭력경험은 아동의 폭력행동을 높이며(노치영, 1988), 가정폭력은 자녀들에게까지 전수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사회에 나아가 폭력을 인정하고 행사하는 부작용도 낳는다.(김광일, 1987 ; 김정옥, 1993). 아내구타자들은 67%가 아내를 때리는 동시에 자녀도 때린다. 한국여성의전화 95년 통계에 의하면 아내를 때리는 남성의 50% 이상이 아이들도 때리며, 아내와 아이를 학대하는 남성의 70% 정도가 폭력가정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가정의 아이들은 슬픔과 불행감을 가지고 있고 판단력과 사고력의 손상, 학습장애, 대인관계 실패, 적응장애, 정신신체장애(두통,천식,복통, 말더듬이)를 나타낸다(손명자,1994).⁹⁾

3) 가정의 파괴와 해체

92년 서울시와 대구시의 이혼한 여성 12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이혼사유로 남편의 아내에 대한 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소년.소녀가장 수기에 의하면 아버지의 구타로 어머니가 가출하고, 이어 아버지가 자녀들을 유기하는 경우가 상당수 나타난다. 폭력남편들의 일반적 경향이 아내와 아이들이 집을 떠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협박과 두려움을 주며, 쉽게 이혼에 응하지도 않고, 집을 떠나면 이들을 찾아

8) 이배근(1995), 한국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전문가 워크숍> 자료집, P.23-24에서 재인용

9) 김정옥,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가정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 자료집, p.12에서 재인용

주변인들을 찾아다닌다. 집을 떠난 여성과 아이들은 주소지를 정식으로 옮길 수도 없으며 전학을 하지도 못한다. 남편 모르게 숨어 살아야 한다. 집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도 이미 정서적인 친화와 유대, 상호존중이 없는 가족관계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가정은 파괴된 것과 마찬가지이다.¹⁰⁾

4) 피해자의 가해자 살해

최근 이상희 할머니 사건 뿐 아니라 남희순, 이형자, 이순심, 김명희 사건,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구타하는 아버지를 살해한 전경진 사건은 가정폭력은 가족 전체가 모두 피해자화 됨을 알 수 있다. 피해자들은 사회와 단절된 상태에서 항상 표출하지 못하는 분노와 두려움, 또한 미래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하지 못하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서 분노와 두려움, 또한 미래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하지 못하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서 났거나 잠들어 있는 등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혹은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순간에 자기방어적으로 살해하게 된다. 김명희는 지속된 구타와 잔인한 성적학대를 동시해 당해온 경우, 구타후 잠든 남편을 살해하였다.

1. 가정폭력
2. 구타
3. 성적학대
4. 상습적
5. 가정폭력
6. 구타
7. 성적학대
8. 상습적
9. 가정폭력
10. 구타
11. 성적학대
12. 상습적
13. 가정폭력
14. 구타
15. 성적학대
16. 상습적
17. 가정폭력
18. 구타
19. 성적학대
20. 상습적

4.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가정폭력의 심각성으로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수준에 이르렀다. 과거 친·인척을 중심으로 한 대가족 형태의 사회망이 결핍된 오늘날의 고립된 핵가족 내에서의 폭력의 발생은 인권유린으로 간주되는 범죄적 성격을 띄고 있다. 그리고 그 해결도 가족의 지원망에 의존하기에는 피해자들이 겪는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피해가 너무 크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단순히 폭력에 대한 대처가 아니라 인권보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1. 가정폭력
2. 구타
3. 성적학대
4. 상습적
5. 가정폭력
6. 구타
7. 성적학대
8. 상습적
9. 가정폭력
10. 구타
11. 성적학대
12. 상습적
13. 가정폭력
14. 구타
15. 성적학대
16. 상습적
17. 가정폭력
18. 구타
19. 성적학대
20. 상습적

10) 김혜선(1996),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환경과 사회 96년 여름호, p.95

1. 가정폭력
2. 구타
3. 성적학대
4. 상습적
5. 가정폭력
6. 구타
7. 성적학대
8. 상습적
9. 가정폭력
10. 구타
11. 성적학대
12. 상습적
13. 가정폭력
14. 구타
15. 성적학대
16. 상습적
17. 가정폭력
18. 구타
19. 성적학대
20. 상습적

서구에서는 가정폭력은 적극적인 폭력행위로써 통제의 대상이 되어 제3자(지역사회, 경찰, 국가 등)가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회복지적.법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채택하였다. 가정폭력의 발생을 원초적으로 방지하는 일차적 예방, 발생한 사건에 대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대책의 2차적 예방, 그리고 폭력의 재발을 막거나 피해자의 재발을 돕는 3차적 예방 등의 단계적 대응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윤진, 1987).

미국의 경우, 1890년 북캐롤라이나 주의 대법원이 아내에게 사소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한 이래로 1973-1983년 사이에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반응을 수정하기 위한 법들이 제정되어 현재는 아내구타에 대해 민사적 보호명령으로부터 영자없는 체포 및 형사기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¹¹⁾ 세계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포함한 아동학대가 방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학대받고 있는 아동의 발견, 개입, 치료,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브라질, 이스라엘, 우루과이,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에 관하여 찬반이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 반대론은 현행법 내에서 절차상의 운용을 강조한다. 현행 형법과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에 의해서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차원에서 기존의 법으로 가정폭력 문제를 대응하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다.

현행 '형법 25자 상해와 폭행의 죄' 규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간의 폭력은 존속에 대한 폭행만을 규정하고 있고, 비속 및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아내 구타는 일반인들간의 폭력에 기준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아내구타를 단순한 부부싸움, 개인 가정사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 의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 현실적 토대가 된다. 가해자 남편을 신고해도 경찰은 가족내의 일이라고 상관하지 않으므로 법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된다. 경찰의 내부지침은 될 수있는데로 남의 가정

11) 심영희(1994), <아내구타의 사회적 의미와 대책> 가정폭력방지법 추진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사에는 끼어들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경찰의 직무유기가 되지도 않는다.

모자복지법에서는 보호해야 할 모의 개념에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여성, 폭력에 의해 가출한 여성, 자녀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여성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복지급여와 복지지급대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4). 현행 복지급여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이 명목화 되어 있고, 복지지급대여에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이 명목화되어 있다. 또한 구타의 피해여성을 일시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타당한 여성이 모자복지법에 의한 복지급여 수혜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정부차원의 일시보호시설은 6개소에 불과하며, 홍보부족으로 구타당한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며, 상담 등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부문은 취약한 상태이다.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우리나라 유일한 법적 근거인 아동복지법 제 18조 제9항은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으나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규정과 범위가 모호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또한 이 법 조항의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인 동법 제 34조 3항은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 법적 제재조치가 매우 미미하여 실제로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된 사례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부모의 면접권(민법 제 837조의 2항)만을 보장할 뿐, 아동의 부모면접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대당하는 아동의 경우도 스스로 제3자의 보호를 선택할 권리가 없으며, 민법상에도 부모의 체벌권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행법 자체가 아동학대를 허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여성의 전화 상담사례에서도 현행법으로는 가정폭력에 대한 위기개입, 피해자 보호와 자활, 가해자 처벌, 가해자 치료 등의 사회적 대책으로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 서비스 체계로는 피해자의 연령과 특성에 맞는 일시보호시설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친지, 이웃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 역시 부정적 측면이 많다. 다음은 그동안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접수한 사례에 나타난 문제들이다.

- 1) 도움을 청한 이웃이나 친구, 시집식구, 친정식구 등은 “맞을 짓을 하지 않았는가”라며 냉담한 태도를 보이며,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중단시키는 등 적극적 개입을 꺼려하며, “참고 살아야 한다” 등의 체념적인 조언을 하였다.
- 2) 피해자가 상담소를 찾아오기까지 수년이 걸리므로, 초기에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발견과 개입이 불가능하다.
- 3) 폭력이 반복될수록 폭력이 흉포화한다.
- 4)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강제적으로라도 교정하여 살고 싶어한다. 그러나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를 강제로 치료할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 5)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해도, 부부간의 문제이니 둘이 잘 해결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맞던 중 살인의 위협을 느껴 뛰어나간 여성이 길에서 만난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부부싸움에 경찰이 관여할 수 없다며 거절한 사례조차 있다.
- 6) 남편의 폭력으로 위협에 처했을 때 피신할 곳이 없었다. 더구나 자녀와 함께 피신할 수 있는 쉼터는 극소수이며, 거주기간도 1달 정도이어서 피해자들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 7) 가출해서 피신한 경우에도 취업을 해야하는데 대부분 육체노동을 하는 임시직이 많고, 그것도 장기간의 구타로 인한 신체적인 질병이 많아 오래 일할 수 없었다. 또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온 경우 주거불안정과 탁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취업활동은 매우 제한적이다.
- 8) 숨어 살면서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경우 들킬까 봐 전입신고를 못하고 그로 인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조차도 중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교육관계 기관에 문의한 결과 교육행정 절차상 그 학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아이를 위장전학시킬 수 없고, 더구나 그런 경우 아이 아버지가 학교에 와서 행패를 부리면 책임질 수 있는냐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 9) 이혼소송시 이혼절차상의 법률적인 도움이 매우 정실히 필요하다. 긴박한 경우에 준비없이 가출한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무료법률상담 및 재판과정에서 실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보복을 두려워하므로 신변을 지켜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 10) 피해여성의 경우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 11) 일반 상담기관과 시설을 거친 피해자들 경우는, 시설근무자들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낙인감을 주는 것을 지적하였다.
- 12) 부모의 학대를 피해서 가출한 청소년, 근친강간 피해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며, 성년기까지의 교육과 생활지원이 필요하다.
- 13) 가정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상담과 보호시설이 없다.
- 14) 최근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 외국인 여성들의 가정폭력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 있다.
- 15) 이외에도 별거시 생활비 지급,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도 요구되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폭력문제는 긴급전화의 설치, 경찰의 위기개입, 일시보호, 직업준비프로그램, 피해자 심리치료와 가해자의 교정프로그램, 의료서비스, 법률서비스, 법정보호,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을 수정하기 위한 교육, 홍보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폭력의 대상자들이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광범위하게 걸쳐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사회의 사회문화적 규범이 가정폭력에 대한 통제를 거의 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가정폭력방지법은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법의 사회통제 기능은 범죄의 억제 효과에 있다. 이는 처벌의 위협 때문에 범죄행위가 억제된다는 것으로 일반적 억제와 특별억제의 두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 억제효과는 처벌의 위협이 일반 사람에게 미치는 제지효과를 말하며, 특별억제는 실제로 처벌되었던 사람이 범죄를 재발하지 않도록 미치는 제지효과를 말한다. 즉 법으로 가정폭력을 금지하고 대책을 세우며 처벌한다면 일반적 억제효과로 일반인의 가정폭력 예방이 가능하며, 가해자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이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장 중요한 기대효과이다.¹²⁾

12) 김혜선, 앞책, P. 98에서 재인용

5. 결 론

우리나라 헌법 제 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95년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북경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폭력이 없는 가족, 지역사회, 국가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방안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도 아동학대의 보호를 아동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이미 OECD 가입을 신청할 정도로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 나라의 건강성을 측정할수 있는 기준은 국민들의 인권의식과 정부가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가정폭력은 인권의 문제이다. 지금 가정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폭력은 이미 범죄의 수준을 넘어섰다. 그리고 점차 그 대상자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는 가정폭력의 방치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가정폭력 발생이 가족복지의 부재에서 발생하고 있음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은 피해자들과 세상을 이어줄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다.

가정폭력방지법은 철저히 피해자 입장에서 논의, 검토되어야 한다. 연내에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기를 전체 피해자들을 대신에서 요구한다.

메모

‘가정폭력방지법’시안의 내용과 방향

이 찬 진(변호사)

1. 머릿말

이 법안의 시안 작업은 95.하반기경부터 진행되어 왔고, 그간 여러 차례의 공청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의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여러 차례의 수정이 이루어져 현재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대체로 이 법안의 시안은 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고 한다.) 입법 준비 및 제정 과정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각종 시안의 내용과 방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 야기되는 각종 현실적 장애(예컨대 예산상의 장애, 각종 전달체계의 수립의 어려움, 입법 관련 전문가들에게 생소한 각종 법체계상의 문제 등) 등을 고려하여 각 정파의 이해관계 등이 개입될 여지가 없도록 최대한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작업 과정에서 간단치 않은 지루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였지만 이와 같은 의견 수렴과정은 이 ‘시안’작업을 주도한 시민단체를 비롯한 관계자 상호간의 입법에 있어서의 ‘합의’를 이룸과 동시에 일반 국민들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을 홍보하는데 큰 기여를 한 측면이 컸고, 이러한 경험은 향후 여타 법제정 과정에서도 좋은 선례로 활용되리라고 기대한다.

본건 시안은 이를 처음 접하는 관련 전문가, 법조인들에게도 매우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체계나 내용이 생경한 부분이 많은데 이는 형사사법체계와 복지법적인 체계를 접목하는 과정에서 특히, 판례법체계를 이루고 있는 미국의 연방 및 각 주의 가정폭력 방지법제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부 제도들을 국내법 체계에 변형, 도입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것인 바,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이해의 곤란을 최대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간 각종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시안 검토에 관한 의견들 중 상당수는 국내의 형법 및 소년법, 가정법원의 재판제도 및 기타 형사특별법 및 형사절차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이 많았으며, 형사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에서 이 법 시안에 대하여 수사권과 관련한 강력한 의견 개진이 있기도 하였다. 이 법 시안에서 채택하고 있는 절차에 관하여는 형 소년법 및 가정법원의 소년재판 제도에 관한 사법절차를 검토해 보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2.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의 방향(제1조 정의, 제2조 가정의 보호 및 유지책임)과 개념

가. '가정폭력'의 대처방향

이 '시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정폭력'에 대한 특별한 대처에 있다.

(1) 먼저 '가정폭력'이 사회 문제인가하는 의문은 이 법의 제정의 당위성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정부 측에서 '가정폭력의 실태'에 관한 과학적인 기초 조사가 없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가정폭력'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 내지 '사회현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에 관계 당사자들 간에 이해가 일치되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입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 법의 내용을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것이므로 이를 짚어 보면 일부 전문가 중에는 가해자 처벌을 위주로 한 형사 특별법 위주로 대처하자는 견해가 있었던 바, 이는 기능주의적인 시각으로서 '가정폭력'의 대처에 있어서 복지주체인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택하지 않았으며, 다만, 초기 초안에서의 문제 - 당사자 위주의 절차 진행에서 오는 피해자의 절차 접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정폭력'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관여하게 된 시점부터는 검찰 등의 최종 처분이 있을 때까지 형사절차로 진행하게 하였다.

(2) '가정폭력' 입법상의 보호법익은 사회의 기본단위로서의 '가정'이라는 보호법익과 '양성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이라는 인권적인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에 관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특히, 여성은 물론,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상대적인 약자에 대한 고려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양 측면에서의 접근을 통하여 이 법 제정이 단지 폭행 당하는 아내 또는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으로만 국한해서 보지 않고, 형사처벌 위주의 현행체계를 강행할 경우 야기되는 가족의 해체(이혼 등 기타 사유로 인한)와 이로 인하여 경제적 약자인 여성, 노인, 아동 등이 겪어야 할 사회적, 구조적인 불평등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 점은 현 단계의 한국사회의 열악한 사회보장 수준에서 그 논거를 갖게 되었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대부분의 전업주부의 입장이나 노인, 아동의 경우에는 가족 해체시 극소수의 극빈자들이 보호되는 생활보호법 및 노인복지법 등에 의한 공공부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생활보장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 처벌법 위주의 입법으로 선회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각국의 경우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절차가 진행될과 동시에 그 가족은 이혼 등을 통하여 거의 대부분 해체되지만 해체된 가족의 구성원들은 모두 사회보장체계에 의하여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된다. 이에 대하여 한국 사회는 이와같은 보장 체계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에서 처벌법 위주의 법제도화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장차 복지수요를 불필요하게 폭증시킬 우려가 있기도 하므로 이는 형사특별법적 대처 위주의 입법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정폭력 및 가정복지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및 사안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존의 시안에서 나아가 '가정보호위원회'제도가 유용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폭 보완하였다. (제4조 관련)

나. '가정폭력' 등의 개념 정의 관련(제3조)

(1) '가정폭력'행위의 정형화 관련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가정폭력'행위의 정형화를 시도하여야한다는 문제제기를 하였고, 구체적인 분류를 시도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본 시안에서는 이와 같은 입법적 시도가 입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결론하에 각종 폭력행위를 망라하는 인용 규정을 통하여 모든 폭력행위를 이 법에서 규제하도록 하였다. 먼저, 행위의 정형화에 관한 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이 법은 성폭력특별법과는 달리 일종의 절차법으로 각종 폭력행위에 관한 처벌조항을 이 법에 둘 필요가 없다. 2) 이 법에서 각종 행위를 정형화해서 입법에 반영하려면, 이에 관한 금지규정 및 처벌 규정(즉, 실제법적인 규정)을 개개의 행위마다 명시하여야 하는데(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등, 형법 제1조 등에 명시되어 있는 소위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한다는 취지의 죄형법정주의'원칙상 당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은 기히 형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각종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1개 또는 여러개를 유형화하는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정의 자체도 모호할 수 있으며, 더우기 처벌규정(형량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점도 입법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정형화는 자칫 잘못하면 죄형법정주의라는 헌법상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이 법 시안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2) 본 시안에 인용된 규정은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들에 대한 폭력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아동 및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문제의 심각성 및 반사회성과 한편으로는 폭력행위가 노출되기 어려운 형편임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적인 고려를 하였다.

(가) 제3조 1호에서 인용되고 있는 조항들은 가정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현행법상의 제 규정을 최대한 망라하였고, 여기에서는 신체에 대한 폭력 뿐 아니라 정신적 폭력, 학대 등까지 포함하여 가정폭력의 유형을 최대한 흡수하였다.

(나) 신고의무 조항(제5조)

1) 먼저 모든 관계인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는 불이익을 입지 않음을 규정함으로써 (제5조 제1항, 제3항) 가정폭력의 문제를 가정에서 사회로 노출시키도록 유도하였다.

2) 아동, 노인, 정신지체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관련 교원 및 교육기관장, 상담원 및 상담기관의 장, 치료 담당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폭력을 인지하게 될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처벌조항을 두었다.(제42조)

3. 가정보호사건 제도의 내용(제2장 관련)

가.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현재의 사법 및 경찰제도의 비능률성에 주목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9조 (사건발생시의 응급조치), 제10조 (보호영장), 경찰관의 출동 및 조사의무 규정 위반시의 처벌조항(제39조) 등인데 이와 같이 사법경찰관리의 가정폭력 현장에 대한 즉시 출동 및 조사의무를 강제함으로써 '가정폭력문제'는 '가족 내부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개입을 꺼리고 입건조차 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수사관행이 대폭 시정될 것을 기대한다.

나. 수사기관에 노출된(신고, 고소, 고발, 기타 여하한 사유로든 인지된 경우)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는 예외없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서 자동적으로 수사를 받게 하였고, 수사를 종결할 때까지는 일반형사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였다.(제7조의 규정 참조) 그 결과 이 경우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1)검찰이 1차적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할 경우

(2)형사재판과정에서 1심법원 및 2심 법원이 판단에 따라 가정법원 송치결정을 할 경우 이외에는 전혀 없도록 하였다.

다. 수사기관에 전혀 노출되지 않은 사안일 경우 피해자가 가정법원에서 폭력행위자를 상대로 하여 제2장에서 정한 각종 보호처분을 신청하는 사건을 제기할 경우에는 형사사건 절차와는 관계없이 가정보호사건절차가 독립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였다.(제7조 제1항 제2호)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가사소송법상의 가사 신청사건과 유사한 형태를 띠도록 되어 있다.

라. 응급처분 등을 비롯한 폭력행위자에 대한 강제처분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게 함으로써 폭력행위자 개인의 인권 보장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또한 기존의 시안과는 달리 영장의 청구에 있어서 반드시 검찰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단, 가정법원에서의 재판과정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사기관간의 기존의 수사권한에 관한 충돌 문제를 제거하였다.(제10조, 제14조 등)

마. 본 시안은 소위 가정폭력의 현장 상황의 경우에 특히 유용하게 적용되도록 고려하였다.

현재 '가정폭력'에 관하여 문제시되는 것은 현장 상황에 대한 경찰 또는 사법의 적극적인 개입과 가해자 및 피해자의 즉시 격리 또는 분리와 이에 부수되는 각종 상담 및 피난처의 제공 등 2차적인 예방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점임을 고려하여, 현행 경찰력 행사 및 사법체계에서 전혀 실현할 수 없었던

(1)경찰관의 즉시 출동 및 개입 (제9조)

(2)현장 상황에서의 법관의 영장에 의한 가해자에 대한 임시적인 퇴거명령, 접근 금지 명령 등을 가능토록 하였다.(제10조 참조; 단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하게 되므로 별도의 보호영장이 필요없으므로 이 경우는 불구속 수사를 할 경우에 해당되도록 하였다.)

(3)복지적인 관점에서 현장 상황에서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의 인도, 의료기관으로의 인도(제9조 제1항 제2,3호)등의 신속한 조치를 의무화 하였고, 각종 상담소 및 보호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피보호자인 아동등에 대하여 함께 상담 및 보호, 치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29,30,31, 36조,37조)

바. 가정보호 사건의 심리와 재판

(1) 가정보호사건이 심리되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반드시 검사, 1,2심법원의 가정법원 가사부 송치결정이 있어야만 되도록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일단 가정법원의 가사부에 송치되거나 피해자가 가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가정보호처분신청을 제기되면, 이 법 시안 제7조 내지 제26조에서 정한 제 규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2)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및 진술권 보장

일반 형사절차에서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제10조 제3항 ; 보호영장 신청 단계에서의 피해자의 참여권) 및 재판 과정에서의 임시처분 신청권(제15조 제1항), 보호처분의 결정에 관한 의견 진술권(제20조 제1항) 이와 같은 권한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을 법관으로하여금 고지하도록 강제한 규정(제20조 제2항) 등을 통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다.

(3) 폭력행위자의 보호에 관한 조항

폭력행위자는 보호사건 심리 중에 보석청구(제 15조 제3항)를 할 수 있고, 재판 결과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인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하였다.

사.보호처분의 종류(제19조)

이를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금지명령,금전지급명령, 상담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단기격리처분 등으로 구분하였고, 금지명령(19조 1항)은 접근금지명령(여기에는 거리의 제한, 장소적 제한(주거 출입금지 등), 대면,통신의 제한 등을 다양한 형태의 제한이 가능토록 하여 사건에 가장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과 친권행사제한 명령 및 친권행사자 지정명령 등(여기에는 양육자 지정 및 위탁에 관한 처분을 포함하게 하였다.)을 둬으로써 아동 등 피보호자들에 대한 복지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다. 한편, 가정보호사건에서는 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최대한 6월까지 격리처분이 가

능토록 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의 종결 및 처분의 종결을 통하여 폭력행위자의 단기간 내의 가정 복귀를 가능토록 하여 가정의 해체 내지 분리를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하며, 위 각 처분에 관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여(제21조 제4항) 다시금 처벌받지 않도록 명시하였다.

아. 보조인 제도의 규정

이 법이 예정하는 절차는 법률의 무지로 인하여 피해자 등이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것에 대비하여 절차접근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관련 전문가 등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1조)

자. 비용의 부담

부담능력이 있는 폭력행위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소요된 각종 비용(의료비,보호시설 이용료, 기타 아동 등 피보호자에 소요된 보호비용 등)을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의 절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폭력행위자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를 통한 폭력의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위와 같은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 상담 및 피해자 보호기관의 설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되, 불필요하게 과다한 민간 기관의 설립을 피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과 각종 기관의 전문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는 각종 감독 장치를 강구하였다.(제2조 제5항, 33조 ,제34조)

메모

가정폭력방지법 초안의 예상 적용과정

이 종 결(변호사)

사안 1.

야간에 아파트 윗층에서 사는 이웃 가족 부인 甲 남편 乙의 부부싸움 소리와 함께 아이의 우는 소리와 부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무언가 둔탁한 물체가 날라 다니는 소리가 들리기도하고 있다. 신고인인 丙은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사람은 전에 그 부인에게서 남편이 자주 때린다는 말을 들은 바도 있다.

丙은 야간에 소란으로 인하여 잠을 이룰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였다.

사안 2.

부인 甲과 아들은 남편 乙로부터 오랫동안 구타에 시달려 왔다. 어느날 甲은 재떨이와 가위 등으로 온몸에 멍과 상처가 나도록 구타를 당하고 우는 아이도 폭행을 당한 후 바로 집을 나왔다. 부인은 친정에서 며칠동안 있으면서 생활을 정리하였으나 집으로 다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고 임시로 친정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가 아빠를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甲은 이혼을 결심한 후 乙을 폭력으로 고소하려고 한다. 친정은 집이 좁은 등 어려운 실정이어서 부인은 다른 살림을 차려 집을 나가야 할 사정에 있다.

제1. 사안1의 경우 - 현행법 상태의 적용

1. 경찰 신고와 응급조치 (제9조)

가. 폭력행위의 제지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에게 경고하며 폭력행위를 중단시킨다.

나. 증거수집활동

이웃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다. 경찰은 즉시 증거수집활동을 한다.

진술조서 등 : 이웃의 진술과 울고 있는 아이의 진술, 피해자 및 乙의 진술을 기재한다. 소정의 간이한 양식의 용지에 위 진술을 기재하고 진술자에게 1차 서명을 요청하여 승락하면 무인기타 인장을 날인하고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작성 경찰의 서명만으로도 족하다.

진술서 : 소정의 양식을 가진 진술서에 현장 목격자 기타 관계인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사진 및 임의채출물 등 : 경찰은 그 현장의 광경을 촬영하고 깨진 물건을 수집하는 등 물적증거도 확보한다.

甲의 의사확인 : 甲이 乙의 임시퇴거 및 접근금지 명령을 원하고 있는지 여부 및 원하고 있다면 그 사유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첨부되어야 할 것이다. 甲이 스스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때 보조인 선임에 대하여도 알려 줄 수 있다.

다. 임의동행요구 또는 현행범체포와 긴급구속

경찰은 폭력행위자(乙)에게 필요한 경우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파출소 등에 동행할 수 있다. 이처럼 현행범인 경우 폭력을 계속 저지하기 곤란하고 甲에게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한다. 또한 긴급구속이 필요한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있다.

라. 경찰의 응급 격리와 치료

피해자(甲)이 원하는 경우 경찰은 甲을 일시 격리하는 조치를 한다. 파출소로 동행하거나 또한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데려다 준다. 甲이 원하지 않고 있으나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제이다.

마. 가정폭력사건발생보고서

담당경찰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가정폭력사건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즉시 송부한다.(사건발생 수시간 이내에 전송할 것을 요망) 이때 수집된 증거목록을 명시하고 첨부자료중 송부가능한 것은 모두 송부한다.

바. 보호영장 또는 일반영장 신청

담당경찰은 구성된 사안에 의거하여 보호영장 또는 일반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사. 보조인과 자치경찰의 보조작용

자치정부에서 채용한 복지경찰의 보조활동과 가정폭력상담소장 및 그 종사원 등의 보조원으로서의 활동이 기대된다

아. 검찰청 법원에 신고되거나 고소된 경우

검사는 즉시 수사지휘하여 112 출동에서 보호영장신청까지 동일한 절차가 되도록 한다.

법원에 신고된 경우 판사는 즉시 검찰에 조사를 의뢰하여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되 가사부 조사관도 이후 심리에 필요한 조사를 병행하게 할 수 있다.

2. 영장신청에 대한 검찰에서의 조치

가. 보호영장 청구

(1) 검사는 담당경찰의 신청을 받아 즉시 2일 단위의 임시퇴거명령 및 甲의 주거 등으로부터의 접근금지 명령을 가정법원에 청구한다.

(2) 검사는 위 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경찰에 계속감시를 지휘하고 또한 甲의 신고를 받아 乙이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고또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서 10일 이하의 구금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3) 위 (1) (2)항의 경우 검사한 제시한 일수는 법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구속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나. 일반영장 청구

검사가 당시의 상태에 가정보호사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乙에 대하여 보호영장에 갈음하여 일반영장으로 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일반영장이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일반영장기각조건부 보호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3. 경찰조사

경찰은 신고접수또는 수사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여 검찰청에 송치한다.(다만 일반영장으로 구속된 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10일 구속기간의 제한으로 10일내에 송치한다.)(제12조)

4. 검찰에서의 조치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한 후 가정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가정법원으로 송치한다.(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으로 기소하는등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한다.)

다만 일반영장으로 구속된 경우라도 甲이 원하거나 사후에 사정이 변경된사유등으로 인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경우 가정법원으로 송치

할 수 있다.

5. 가정법원에서의 조치

가. 구속 폭력행위자에 대한 조치

보석신청을 받아 들여 석방할 수 있다. 보석결정을 할 때에는 아래의 임시처분을 할 수 있다.(보석을 기각하는 경우 임시처분은 甲과 乙을 격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보호처분이 예견되는 경우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므로 대부분 석방될 것이나 심리중 성실한 출석을 강제하는 방법을 선행시켜야 할 것임)

나. 임시처분

甲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정보호의 본안처분시까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할 수 있다.(일반사건에서 가처분의 성격을 가짐)

다. 심리

(1) 개요

가사소송법에 준용하여 대심적 구조를 가진다. 즉 보호처분으로 송치한 검찰이 원고가 되어 이를 입증하는 구조가 아니라 甲이 스스로 또는 보조인등의 도움을 받아 원고의, 그리고 乙이 피고의 지위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형식으로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심리가 진행된다. 乙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동행영장의 발부할 수 있다.

(2) 심리중 일반형사사건화

심리중 법원이 판단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 법원은 乙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고 검찰은 乙을 피의자로서 일반형사사건으로 수사한 후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기소하는 경우 乙은 지방법원 형사부에서 피고인의 지위로 재판받을 수 있다.

(3) 불개시, 불처분 결정

甲 乙의 출석하지 않는등 사유로 심리할 수 없는 경우 불개시 결정을 내리고 乙의 불출석의 경우 지명수배를 내리나 乙의 우월한 책임사유로 불개시 결정을 내리는 경우 동시에 일반형사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 예상된다.

甲과 乙의 관계 변화, 乙의 태도등으로 가정보호본안 처분을 하기에 부적할 경우 법원은 불처분 결정을 내리고 당시에 임시처분이 계속중인 경우에 임시처분에도 중 결처분을 내려야 한다.

라. 보호처분

접근금지 친권행사 부양료지급 사회봉사 수강명령 단기격리처분등 보호처분은 판결 또는 결정으로 한다.

제2. 사안2의 경우

1. 경찰 검찰에 고소하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또는 이를 상담한 상담소, 이를 진료한 의사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가. 증거수집활동

경찰은 경찰고소사건을 또는 검찰수사지휘사건으로 수사를 개시한다. 검찰은 수사지휘하거나 직접수사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 진술서 작성 및 사진 및 임 의제출물 등 확보는 사안1과 같다.

甲의 의사확인 : 가정내 사건으로 가정보호사건 및 일반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고 甲이 乙의 임시퇴거 및 접근금지 명령을 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원하고 있다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나. 폭력행위자(甲)의 조사 및 조치

사안2의 경우 이미 甲과 乙이 격리되어 있어 甲을 격리하기 목적의 보호영장 청구의 필요성은 적다 (다만 찾아와서 괴롭히는 경우 접근금지명령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 형사사건 절차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도록 한다.

경찰은 甲을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데려다 줄 수 있다. 가정폭력사건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송부하기 위한 기록화는 사안1과 마찬가지로이다.

2. 경찰 검찰에서의 조치

경찰은 신고접수또는 수사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여 검찰청에 송치한다.(다만 일반영장으로 구속된 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10일 구속기간의 제한으로 10일내에 송치한다.) (제12조)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가정법원으로 송치하고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지방법원 형사부로 기소한다.

3. 가정법원에서의 조치

가.사안의 분류

(1) 검찰에서 송치된 경우

구속 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보석신청을 받아 들여 석방할 수 있다. 보석결정을 할 때에는 아래의 임시처분을 할 수 있다.

(2) 법원에 신청한 사안의 경우

담당판사는 필요한 경우 즉시 검찰에 조사를 의뢰하여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수 있으나 사안2의 경우와 같이 이미 폭력상황이 종료되어 급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가사부 조사관에게 수사에 갈음하는 정도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조사

관의 의견은 가정폭력사건 발생보고서의 내용에 준한다.(제12조 제3항)

나. 임시처분,심리 및 보호처분결정에 관한 절차는 사안 1과 동일함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

작성자 : 변호사 이 찬 진

변호사 이 종 걸

제1장	총 칙(제1조 - 제6조)
제2장	가정보호사건(제7조 - 제26조)
제3장	가정폭력관련 피해상당소 및 보호시설(제27조 - 제37조)
제4장	벌 칙(제38조 - 제41조)
제5장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법은 가정폭력의 예방, 방지에 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구조와 치료 및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위기의 가정을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가정의 보호 및 유지 책임

- ① 국가와 국민은 건전한 가정과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상담, 폭력발생시의 피해자에 대한 피난처와 위기개입 및 지원서비스의 제공,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

료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한 가정폭력의 확대방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복지서비스 등 법적, 제도적 장치의 제공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이하의 행정기관, 경찰관서에 해당 직제를 설치하고 전문공무원을 육성, 배치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관련 피해상담소,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수사기관의 관련 공무원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교육 및 재교육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시 관련 민간 시설 및 법인에 예산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3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족 또는 세대구성원" 간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57조 제1,2항(상해, 존속상해), 제260조 제1,2항(폭행, 존속폭행), 제271조 제1,2항(유기, 존속유기), 제273조 제1,2항(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학사), 제276조 제1,2항(체포, 감금 및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83조 제1,2항(협박, 존속협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제321조(신체 수색),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제366조(손괴), 아동복지법 제18조 제2호, 제5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소정의 행위를 말한다.

2. "가족 또는 세대구성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가. 법률상 배우자 및 전배우자
- 나. 사실혼 관계 및 그 관계에 있던 자
- 다. 법률상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 라. 계부, 모자 관계에 있는 자
- 마. 기타 동거친족 관계에 있는 자

3. "가정보호처분"이라 함은 가정폭력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가정폭력사건에 관하여 심리, 결정하여 발부하는 폭력행위자에 대한 각종 처분을 말한다.

4.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을 말하고, "폭력행위자"라 함은 제1호 소정의 행위자를 말한다.

제 4조 가정보호위원회

①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사항을 연구,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직속 하에 중앙가정보호위원회를, 시도에 지방가정보호위원회를 각 두어야 한다.

② 가정보호위원회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가정폭력 실태 조사 및 연구
- 2. 피해자의 보호 및 폭력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사항에 대한 심의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 3. 관계 기관에 대한 심의결과 제출 및 시정 요구
- 4. 가정폭력실태 조사 및 심의결과에 대한 공표

③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은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변경시 해당 가정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중앙가정보호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 각 분야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지방가정보호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민간 각 분야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기타 가정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조 신고의무 등

① 가정폭력사건 발생을 인지하게 된 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의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한 교원 및 교육기관의 대표
-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스스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대표, 상담을 담당한 자 또는 그가 속한 기관의 대표

③ 위 제1,2항에 의한 신고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인은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 6조 고소, 고발의 특례

이법에서 정한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폭력행위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은 폭력행위자를 고소, 고발할 수 있다.

제 2 장 가정보호사건

제 7조 가정보호사건의 범위

- ① 이 장에서 규율하는 가정보호사건은 다음 각호의 사건으로 한다.
 1. 제 3조 제1호 소정의 가정폭력사건 중 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를 거쳐 가정보호사건 담당 판사가 검찰송치결정을 한 사건을 제외한 사건
 2.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를 상대로 하여 관할법원에 가정보호 처분을 신청한 사건
- ② 제1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 1심 법원 및 2심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사건에 관하여 관할법원에 가사부 송치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폭력행위자를 수사한 결과 가정보호사건으로 하기에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기소할 수 있다.

제 8조 관 할

- ①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폭력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 ② 가정보호사건은 가정법원 가사부 또는 지방법원 가사부 단독판사에 속한다.
- ③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가사부단독판사가 행한다.

제 9조 사건발생시의 응급조치

- ① 가정폭력사건에 관한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즉시 출동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자의 폭력행위 제지 및 증거 수집
 2.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관련 보호시설에의 인도(단, 피해자의 동 의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3. 피해자 긴급치료 필요시의 의료기관 인도
 4. 가정폭력사건 발생 보고서의 작성 및 관할 검찰에의 즉시 송부
- ② 전항의 가정폭력사건발생 보고서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할 사건 개요, 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인적사항, 참고인 등 증거관계, 폭력 상황에 대한 재발 가능성 여부, 사법경찰관의 동 사건에 관한 처분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10조 수사 과정에서의 보호영장의 신청 및 발부

- ① 폭력행위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사건에서 수사기간 중 가정폭력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과 같은 보호영장을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10일 이내의 2일 단위의 단계별 임시퇴거영장
 2. 10일 이내의 피해자의 주거, 직장, 거리에서의 100미터 이내로의 접근금지영장
 3. 폭력행위자가 발부된 임시처분을 위반할 경우에 부가되는 10일 이하의 구금영장
- ② 관할 법원은 위 각 청구된 영장에 관하여 필요사 위 기한 내에 1개 또는 수개의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폭력행위자로부터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폭력의 피해를 받거나 재발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소명하여 위 제1항의 영장의 발부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위 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은 즉시 이를 폭력행위자에게 집행하고, 피해자 등에게 그 부분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11조 보조인의 자격과 임무

- ① 가정폭력상담소장, 피해자보호시설의 장, 관련 의료기관의 장과 교육기관의 장 및 각 그 지정을 받은 종사원과 변호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당해 사건의 폭력행위자를 제외한다.)은 피해자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보조인은 피해자가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정신지체, 기타 스스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경우 독립하여 피해자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보조인의 역할과 권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2조 수사 및 조사

- ① 관할 경찰서장은 고소, 고발 및 신고를 접수한 후 또는 담당검사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30일 이내에 당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관할 검찰청에 처분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송치하여야 한다.
- ② 피해자가 가정보호처분을 신청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필요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30일 이내에 사건에 관한 조사를 종결하고 처분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③ 가정보호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필요시 가사부 조사관을 통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3조 소환

- ① 기록을 송치받은 담당판사는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기일을 지정하여 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및 기타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 ② 담당판사는 심리기일 전에 폭력행위자 및 피해자로부터 제 16조 각호 소정의 가정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여 사건에 관한 처분의견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 14조 동행영장의 발부 및 집행

- ① 폭력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단, 사법경찰관의 조사에 불응한 폭력행위자의 경우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당판사는 소환없이 폭력행위자에 대한 동행영장을 발할 수 있다.
- ② 동행영장에는 피동행자의 성명, 연령, 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 또는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 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판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15조 임시처분

- ① 담당 판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정보호처분 시까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폭력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임시 처분을 발부할 수 있다.
 1. 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퇴거명령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거리에서의 100미터 이내로의 접근금지명령
3.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의 구금영장의 발부 및 집행
- ② 폭력행위자가 전항 각호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담당판사는 10일 이하의 감치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 ③ 검찰, 법원으로부터 가사부송치결정을 받아 이송된 구속 폭력행위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중 제1항 3호의 영장 발부 및 집행에 따라 구속된 가정폭력행위자, 제21조 제5항의 처분을 선고받은 자는 불복한 경우에 관할 법원에 보석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 94, 95, 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담당판사는 제1항 각호,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가사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교도소 및 구치소 소속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담당판사는 제1항, 제2항의 조치를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단, 제2항의 경우 1회, 10일 이하에 한하여 결정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 16조 심리

가정폭력사건에 관하여는 사건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을 한 후 판결 또는 결정을 한다. 기타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가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단, 같은 법 중 제 43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 17조 불개시결정

담당판사는 폭력행위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사건의 심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검찰에 폭력행위자에 대한 관할검찰에 지명수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 18조 불처분 결정

- ① 담당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을 폭력행위자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담당판사는 제1항 전문 후단의 결정을 할 경우에 180일 이내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할 수 있다.

제 19조 보호처분의 종류

① 금지명령

금지명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접근 금지명령

폭력행위자의 6개월 이하의 기간내 피해자 거주 가택출입, 동거, 대면, 통신 기타 이에 상당한 행위를 금하는 명령

2. 친권행사의 제한 및 친권행사자 지정명령

폭력행위자에 대한 친권 상실, 제한 및 친권행사자 지정, 후견인 지정 등 단,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자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한 양육권 금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의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일시 양육을 위탁하는 명령과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인도명령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금전지급명령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양료 지급명령

폭력행위자가 부양의무자인 경우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상당한 범위의 부양료 지급명령

2. 손해배상 및 보상명령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 및 위자료와 피해자의 이주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지급명령

③ 상담 및 수감 명령

가정폭력전문상담소,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기관 등에 의한 100시간 이하의 상담 및 수감에 관한 명령

④ 사회봉사명령

사회복지사업법 소정의 사회복지시설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에서 180일 이내 300시간 이하의 노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명령

⑤ 단기 격리처분

폭력행위자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관할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감하는 처분

제 20조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

① 피해자는 심리에 관하여 제19조 각항 각호의 처분중 1 또는 2 이상의 처분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담당판사는 심리기간 중 피해자에게 위 각항 제19조 소정의 보호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 21조 보호처분의 결정

① 담당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제19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2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단, 같은 조 제5항의 처분의 경우에는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

② 제19조 제2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폭력행위자에게 가납명령을 부가할 수 있다.

③ 제19조 제2항 각호의 처분은 피해자 및 그 보조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④ 제18조, 제19조의 각항 및 각호의 처분을 선고받아 그 처분이 확정된 자는 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 22조 결정의 집행

① 제19조 제2항에 관한 가납명령은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있다.

② 제19조 제3,4항 소정의 결정에 관하여 당해 교육기관 수탁기관 또는 복지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폭력행위자의 명령이행상황에 대하여 이를 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3조 불복

① 제14조의 임시처분에 관하여 처분의 결정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폭력행위자 및 그 대리인, 피해자 및 그 보조인은 가정법원에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처분에 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있다.(단 제19조 제5항의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다.)

③ 항고(항소)법원의 결정에 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상고)할 수 있다.

제 24조 항고(항소)장의 제출

- ① 항고 또는 항소를 함에 있어서는 항소장을 원심 가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항고장 또는 항소장의 제출을 받은 가사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항소)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25조 항고(항소)의 재판

- ① 항고(항소)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판결)로써 항고(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② 항고(항소)법원은 항고(항소)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 가사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가사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 26조 집행의 정지

항고(항소)는 결정(판결)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 27조 검찰송치

담당판사는 심리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가정보호처분에 적당하지 아니하여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폭력행위자가 제19조 제 1,3,4,항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의 집행을 중지하고 위 사건을 당해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제 3 장 가정폭력 관련 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제 28 조 상담소의 설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 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상담소의 설치기준 및 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9조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가정폭력의 신고를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2.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거나 가정폭력피해시설로 인도하는 일
- 3. 피해자와 독립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이법에 의한 사법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하는 일
- 4.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사법경찰관리등으로부터 인도 받는 일
- 5.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홍보하는 일
- 6. 기타 가정폭력 행위 및 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제 30조 보호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③ 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및 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1조 보호시설의 업무

- ① 보호시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제 29조의 각호의 일
 - 2.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 3.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사회적 자립을 도우는 일
 - 4.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 ②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보호시설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 제 각호로 인한 전부 또는 일부의 비용을 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그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 32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제 28조 또는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3조 감독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 34조 허가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 28 조 제 3항 또는 제 30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 3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한 때 또는 조사 검사를 거부 하거나 기피한 때

제 35조 경비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28조 제 1항 또는 제 3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 36조 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서 제 31조의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행하던 자가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7조 의료보호

-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치료를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또는 보건소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업무를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도 행한다.
- ② 이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독립하여 제1항의 의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 2항의 경우 폭력행위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상할 수 있다.

그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 38조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4장 벌칙

제 39조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 40조 소환의 불응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 41조 폭력행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각종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42조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 5장 부칙

1. 이법은 1997. 1.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가정폭력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메모

권영자(국회의원, 신한국당 여성위원장)

메모

가정폭력방지법(안)에 대한 입법화 전략을 중심으로

신 낙 균(새정치국민회의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새정치국민회의는 본 법안의 마련과정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들을 이미 지난 5월 이후부터 해왔다. 7월 11일 새정치국민회의 가정폭력방지법(안) 공개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이후 본 법 제정과정에서 관련 국회 상임위 국민회의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계속 진행하여 왔다. 현재 약간의 법기술상의 조항조정을 전제로 9월 18일자 당무회의에서 당론으로 확정되었으며 현재 국회발의를 위한 실무작업만 남겨둔 채 있다. 국민회의 가정폭력방지법(안)의 주요 골자는 별지로 첨부한 바와 같다.

이미 아시겠지만 국민회의(안)은 여성계(안)과 상당할 정도로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이번 공청회에서 국민회의는 법안 조목별 토론보다는 입법제정시 반드시 제정하여야 할 입법내용과 입법화전략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춰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토론 진행에 앞서 토론 주제를 나름대로 몇 가지 정리해 보자면,

첫째, 국회입법과정시 국회의원들, 특히 여성특위 위원들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안제정의 필요성, 가정폭력방지법이라는 특별법 제정으로 가정폭력을 얼마큼 초기부터 효과적으로 제어해 낼 수 있는가 하는 입법의 효과를 설득해 내는 입법전략 및 홍보전략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둘째, 첫번째 토론 주제와 관련하여 가정폭력방지법을 통해 초기부터 가정폭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입법적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고, 그러한 입법적 절차를 여성계를 비롯하여 4당과 여성특위에서 의견 통합을 여하히 해 낼 것인가.

셋째, 가정폭력방지법의 개별 조문화 작업에서 법리상의 기술 문제가 기존 사법체계의 관행과 충돌되거나 법조문만으로 형식화될 수 있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설득, 보완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이라는 입법취지와 입법정신을 살려내기 위한 큰 틀에 대해서 대중적 설득논리와 함께 국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쟁점별 로비 작업을 효과적으로 전제하기 위한 세부적인 행동 지침이 경우에 따라서 여성계와 4당 협조체제와 함께 진행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새정치국민회의 가정폭력방지법(안)은 여러 차례 신문에 소개되기도 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이미 많은 내용이 소개되었기에 우선 두번째 토론 주제부터 토론하고자 한다.

두번째 토론 주제인 가정폭력을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입법적 절차는 반드시 여성계를 비롯한 4당이 의견통일을 해 나가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한 입법적 절차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① 가정폭력에 대한 주민신고제
- ② 치매노인, 아동, 장애인 등 본인이 스스로 그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가들의 신고의무제
- ③ 사건 발생시의 가정폭력에 대해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사법경찰관의 현장응급조치
- ④ ③항과 관련하여 행위자의 폭력행위를 제지할 수 없고 그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의 행위자의 체포권과 24시간 이내의 경찰관서 보호·유치권
- ⑤ 임시 강제퇴거명령제도와 임시 감호조치제도 (담당판사의 명령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집행)
- ⑥ 가정폭력행위자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제도(접근금지명령, 양육금지명령, 처분금지명령, 인도명령, 손해배상명령, 부양료지급 명령, 상담·수감명령, 감치·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명령)

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명령)

⑦ 사법경찰관의 직무유기죄

이러한 입법절차는 ④항을 제외하고는 여성계와 국민회의가 공통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제도이다.

⑤항의 경우 국민회의에서는 수사상의 특례조항을 설치하여 사법경찰관이 담당판사에게 신청하여 담당판사의 명령허부로 집행여부가 부과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연안은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검사가 담당판사에게 청구하여 담당판사의 명령허부로 집행여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항과 관련하여 경찰의 체포권 제도가 가정폭력 개입에 대한 사법전략 중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미국에서도 많은 사례가 발표되고 있고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주장되고 있는 사안이기에 여연안에서도 이를 비중있게 고려하였으면 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사법절차 전략으로는 초기에 경찰관의 효과적인 개입의 방식과 절차를 밟고 집행하기까지 시간이 고려되기에 많은 토론과 비중 있는 제도적 고려가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보호제도 절차에 대해서는 큰 틀에 있어서 여연안이나 국민회의가 대체적으로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첨부한 국민회의의 가정폭력방지법(안) 골자를 참고하기 바란다.

첫번째와 세번째 주제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이 법조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입법화 전략을 위한 세부적인 행동지침을 여하히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 첫번째로 본 법안이 가정해체나 사생활침해가 아닌 가정보호의 목적에서 해체 위기에 놓인 가정에 사회정책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논리의 개발이다. 사회 정책의 이슈로 부각된다 함은 이 사항과 관련된 법, 제도, 서비스, 예산 확충 등의 성립을 의미한다. 이것과 관련, 군사독재 시절 국가 공권력의 무차별한 개입과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법경찰관행으로 인해 국민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개인 사생활에 국가 공권력, 사법경찰이 꼭 관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동일시되기에 이러한 알레르기를 해소하고 민생치안 서비스로서의 사법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여성계가 적극적으로 여론화시켜야 하며 법이 주는 효과, 즉 계몽적인 민생 입법의 필요

성도 더 많이 여론화시켜야 되는 것도 우리 모두의 과제라 본다. 이 점에서 법률민주주의라는 역여론도 심도있게 공략하는 방안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주민신고제와 전문가신고의무제 도입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꺼려하는 정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약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도 없고 용인되어서도 안되는, 따라서 약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내지 사회연대성의 원리로 이 부분도 많이 여론화 되어야 할 사안이다.

셋째, 가정폭력방지법(안)의 집행시 관건인 입법체계에 놓여진 경찰, 검사, 담당판사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의 실태, 심각성, 효과적인 입법적 대처 방안들에 대한 광범위한 부분별 간담회가 여성계를 중심으로 열렸으면 한다.

넷째, 가정폭력방지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 난 뒤 소관 국회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집중적인 심의가 있게 된다. 여성계는 이미 지난 성폭력특별법 제정시 경험한 바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회청원 내지 국회발의 절차가 끝나게 되면 각당의 법사위원회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 로비 작업에 대한 전략이 단계별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야 법조계와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리라 본다. 특히 변협이나 피해자 법학회, 법조계 원로들로부터 본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법조계 연대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법안에 국회심의 과정에서 법사위원회 외에 관련 위원회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 여성특별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에 대해 심의하고 그 의견을 법사위원회에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시 특히 국회 여성특위에서 각당의 의견을 토대로 가능한 한 여성특위에 통일된 입장을 담은 <안>을 법사위에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특위의 통일된 입장 제시는 국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강력한 압력도구로 자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여성계에서는 국회 여성특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통일된 입장을 담은 <안>을 만들도록 로비활동을 전개하여야 되리라 본다.

여섯째, 이미 여성계도 인정하고 있듯이 국민회의는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법, 제도, 정책방안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정치인들은 다 똑같다고 하는 무차별적인 정당로비 전략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 점에서 효과적인 정당 차별화 로비 전략이 제시되어야 하리라 본다.

여성계나 토론에 참가한 각당의 여성국회의원들은 이미 여성계와 오랫동안 일한 경험에 있는 사람들이며 가장 앞장서서 당내에서 가정폭력방지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이 점에서 여성국회의원과 여성계의 보다 조직적인 행동전략 역시 심도있게 토론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정폭력방지법(안) 제정시 반드시 필요한 입법절차에 대한 각당의 합의와 대국민 여론화 작업이 충실히 병행되어 국회입법 과정에서 훌륭한 결실이 맺어질 수 있길 바란다.

< 별 지 >

가정폭력방지법(안)

새정치국민회의 여성특별위원회

1. 취 지

가. 그동안 가정폭력이 가정내의 문제로만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방관·조장되어 왔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다른 사회적 폭력보다 훨씬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 수단도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폭력을 사회적으로 학습시키는 역작용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제 가정폭력은 더이상 해당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고 사회적 폭력으로, 사회가 국가가 개입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이점에서 가정폭력방지법안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기가정에 사회와 국가가 개입하여

- 첫째, 관례적인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 둘째,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제재의 효과를 발하며,
- 셋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정책적, 법적, 교육적 노력의 의무를 지우게 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도록 함에 그 법안 제정의 취지가 있다.

나. 따라서 이 안의 입장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정폭력에 관한 다양한 입법론, 예를

들면 형사처벌강화론, 가사소송법개정론,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론 중에서 마지막 입장, 즉 특별입법론의 입장에서 마련된 것이다.

다. 이 안은 그 입법의도를

- (1) '가정의 해체'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 (2)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오히려 국가가 신속하게 개입하여 폭력을 제지하고 그 폭력성을 교정하려는 갖가지 시도를 행하고,
- (3)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대한 보호를 베풀으로써,
- (4)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가정'을 보호·육성 또는 회복하고자 하는데 두고 있다.

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 (1) 이 법의 운영주체로서 국가(와 지방단체), 경찰 및 사법부를 예정한 다음
- (2) 국가 및 경찰에게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의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고
- (3) 사법부에게는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보호처분을 선택·부과하도록 세밀하게 규정하였다.

2. 주요 골자

가정폭력 방지법의 입법목적은 달성하기 위해서는

- (1) 피해자가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
 - (2) 가해자에게 과해지는 보호처분이 적정·타당하여 끝내는 교정되어 원만한 가정상태로 복원될 수 있을 것이 요청됨.
-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 '법률로서의 실효성 확보'라고 할 것임.

가. 법률로서의 실효성확보를 위해서

- ① 가정폭력의 예방·방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단순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무규정화'하고, 또 그 내용을 구체화함 (안 제4조)
(예) ○ 응급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
○ 실태조사와 연례적 공개
○ 교육과 상담의 실시
○ 가해자 감호시설·치료프로그램 운영
○ 예산조치의 의무화
○ 전담직제 설치 및 전담공무원의 육성·배치
○ 가정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 ② 가정폭력 사건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중 스스로 신고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아동이나 정신장애가 있는 노인 및 정신장애자 등에 대해서는 이들을 보호·교육·상담·치료하는 사람 즉 교사, 의사, 전문상담자, 복지요원 등에게 가정폭력을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의무 조항을 규정하였고 신고의무를 고의로 태만히 했을 경우 행정상 처벌로서의 과태료 처분에 과하도록 규정함
(안 제 9조, 안 제65조제3항)
- ③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최초의 국가체계로서 경찰을 선택·설정하고, 경찰에게는 검사의 지휘없이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토록 하는 수사상의 특례조항을 둠. (안 제10조)
- ④ 나아가 진행중인 폭력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경찰에게
○ 현장출동의 의무화,
○ 현장에서의 제지조치권,
○ 가해자에 대한 일시적 보호유치권,
○ 퇴거명령 신청권
을 부여함. 특히 퇴거명령신청을 전송으로도 가능케 함.

(안 제11조, 안 제12조)

- ⑤ 가정폭력 사건을 고소 또는 신고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현장에서의 가정폭력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치 않은 경찰에게 「특수직무유기」 조항을 규정하여 처벌하도록 함. (안 제63조)
- ⑥ 가정폭력의 동기·실태의 다양성과 교정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의 종류를 최대한 확장(10가지)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처분이 선택·부과되도록 배려함 (안 제31조)
- ⑦ 보호처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처분불이행죄(일종의 법정모욕죄)를 도입함 (안 제61조)
- ⑧ 상황이 개선되어 가정평화 회복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경우 신청에 의한 보호처분의 취소와 변경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토록 배려함 (안 제37조)
- ⑨ 민간에 의한 상담소·보호시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선언규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무화 함 (안 제45조, 안 제47조)
- ⑩ 가정폭력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경찰의 수사는 10일, 법원의 처리는 3개월내로 제한하였음. (안 제10조제4항, 안 제28조)
- ⑪ 가정폭력행위자를 일단 형사범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보호사건으로 다루는 이법의 특성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위고소 또는 신고자에 대한 특별무고죄를 신설함 (안 제62조)
- ⑫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또한 효과적인 원인 규명등을 위하여 전문가의 조사와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가정보호사건을 비공개로 심리토록 하고, 그 보도를 금지함(보도금지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규정을 둠). (안 제60조)

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 ① 가정폭력을 고소하더라도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고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존중함.

(따라서 이 법에 의한 고소는 '보호사건고소'라고 할 수 있음) (안 제 7조)

- ② 가해자 고소에 있어서 직계존속도 가능토록 하였음. (안 제8조제2항)
- ③ 가해자가 부모일 때, 친족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고소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대비하였음 (안 제8조제3항, 제4항)
- ④ 상담소, 피해시설의 장에게 고소대리권을 부여하고, 또 보조인자격을 부여하여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를 원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5항)
- ⑤ 피해자의 병원으로의 후송 또는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후송, 가해자 퇴거명령 등을 피해자가 권리로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 ⑥ 피해자에게는 보호사건처리절차에서의 참여권(출석·의견진술·자료 제출), 보호처분 청구권, 법원의 각종 결정에 대한 항고권등을 부여함. 또, 법원으로 하여금 이들 권리를 고지토록 함. (안 제29조)
- ⑦ 피해자가 미성년·노인(70세이상)·장애인인때에 법원이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
- ⑧ 고소를 보호처분결정 전까지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개입에 의하지 아니한 당사자 해결시 보호사건 처리절차의 진행을 중단·종결케 함. (안 제30조제1항)
- ⑨ 보호처분의 종류를 다양하게 설정함으로써 가정폭력이 일어난 가족구성원들의 특수한 상황과 입장에 따른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함.

(안 제31조 내지 32조)

다만, 이상과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는 피해자의 형사고소권, 민법에 의한 이혼청구·양육자지정청구·위자료청구·분할재산청구 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선택의 가능성이 그만큼 개방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런 의미에서 피해자는 가정의 해체를 전제하지 않고 이 법에 의한 보호절차를 이행하여 자신은 보호받으면서 가족회복을 기대해 보거나, 가

정의 해체 즉 이혼등 절차의 전 단계의 사법절차로 이 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임)

- ⑩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이른바 쉼터·피난처를 제공토록 함.(안 제45조, 제47조)

다. 가해자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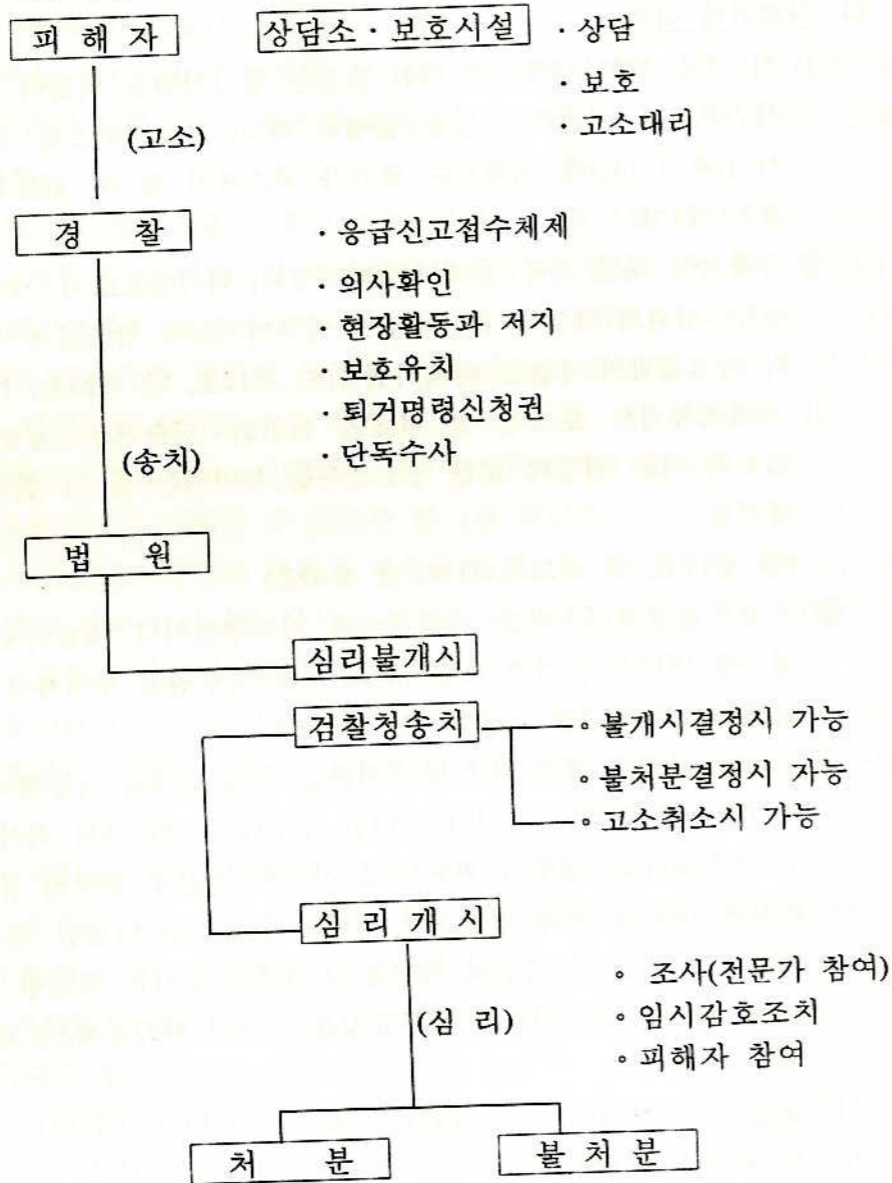
- ① 이 법에 의한 가해자에 대한 고소는 형사처벌을 위함이 아니라 보호사건으로의 처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보호사건으로 심리·결정된 사건(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소제기 할 수 없도록 하였음(안 제7조제1항)
- ② 가해자에 대한 각종 강제처분(퇴거명령, 임시감호조치, 각종 보호처분 등)은 법원의 개입과 판단으로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위헌의 소지와 타법률과의 충돌을 배제하였음(안 제12조, 안 제23조, 안 제31조)
- ③ 가해자에게도 보조인 및 변호인 선임권·진술거부권등을 보장하고, 법원의 각종 결정에 대한 항고권등을 부여하는 등 그 인권을 최대한 배려함 (안 제17조, 안 제22조제1항, 안 제40조)
- ④ 보호처분결정이후라도 가해자에게 개과천선이나 재발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존 보호처분의 취소 청구권을 부여하여 원만한 가정생활로의 복귀를 보장함. (안 제37조)
- ⑤ 그러나 이법에 의한 각종 보호처분을 통해 교정의 가능성이 없고, 그 폭력행위의 결과나 죄질이 중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사후에라도 '법원의 판단'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케 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하여 국가 형벌권의 행사가 필요하고 타당한 경우에, 대비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의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하도록 의무규정을 둠. (안 제27조제2항, 제3항)

3. 개요

가. 법안의 구성

65개조, 부칙 2개조

나. 가정폭력 및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절차 개요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형사법과의 관계

- ① 피해자는 고소 또는 신고시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이법에 의한 보호사건에 관한 의사를 통해 사건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음.
- ② 고소 또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도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토록 하였음.
- ③ '진행중인 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 조치케 함.
- ④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처벌에 있는 경우에 그 고소 또는 신고는 일반 형사사건에 따라 진행될 것임.
- ⑤ 법원은 송치받은 가정폭력사건의 죄질, 결과 동기등에 비추어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음.
- ⑥ 결론은 이 법에 의해서도 형사처벌의 길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다만, 최초 고소 또는 신고시에 피해자의 의사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만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다소 제약을 가한 것 뿐임.

나. 민사법적 청구와의 관계

- ① 이 법에서 정한 10가지의 각종 보호처분중 일부, 예컨대 양육금지, 처분금지, 인도, 손해배상, 부양료지급의 명령 등은 기존 민사법으로도 실현가능하나, 이 법의 보호처분은 기간이 정하여진 '잠정적인 조치' 들임
이는 가정의 해체를 원치 않고 존속·회복을 기하기 위한 이 법의 입법 목적에 충실히 하기 위한 것임.
- ② 또한 이 법에서 정한 각종 보호처분은 가정의 존속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다양한 보호처분 중 적절한 종류가 선택되어 발하여질 경우에 실용적이라 하겠음
-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그 의사여하에 따라 기존 민사법적 청구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함.

메모

국가차원의 가정폭력 예방과 보호가 시급하다

이 미 경(국회의원, 민주당)

1. 가정폭력의 예방과 보호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절실

- 대부분의 가정폭력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 노인에게 집중되며 상습적, 지속적으로 행해진다는 사실이 여러 경험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내의 문제로 치부되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처럼 방치되어있는 가정폭력은 또다른 사회폭력을 확산시키는 범죄행위이다.
-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의 건강은 사회의 건강과 직결된다. 가정의 건강과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예방대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방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가정폭력의 예방과 건강한 가정의 유지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가정폭력방지법의 내용

- (1)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을 위해 국회 법제예산실 등과 협의를 거쳐 법의 초안을 작

성하고, 마지막 검토 단계에 있음.

(2) 법의 주요 내용

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법의 체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 역할의 의무화와 내용의 구체화.
가정의 위기에 국가와 사회가 적극 개입하여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시행하되 가정의 해체를 최대한 억제하고 가정의 건강한 회복에 역점을 둠 : 교육, 상담, 피해자의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가해자에 대한 감독시설의 설치와 제공, 예산상의 조치 필요
가정보호위원회 설치·운영(국무총리산하에 중앙가정보호위원회,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소속 하에 지방가정보호위원회, 시군구의 기관장 소속하에 지역가정보호위원회 신설), 전담공무원제 실시 등
-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를 희망한 때는 가정보호건으로 심리. 단 동기와 죄질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처리 가능
- 고소·고발을 받은 경찰의 즉시 출동과 응급조치(퇴거, 접근금지) 신청권 부여
검사의 지휘를 통한 수사의 즉각 착수. 10일 내 수사의 종결.
- 담당판사의 직권에 의한 피해자 심문, 증거 채택 가능. 의사,심리학자,상담소 등 전문가에게 조사의뢰, 심리시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거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사송치일로부터 3개월 내 심리와 처분의 종료.
- 가정보호처분의 종류 : 접근금지명령, 양육금지명령, 인도명령, 손해배상명령, 부양료 지급명령, 상담·수강명령, 시설위탁명령, 사회봉사명령

나. 피해자의 보호 :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와 구제에 중점을 두고 법안 마련

- 가해자를 고소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희망하는 경우 사건의 가정보호사

건으로 처리

- 모자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의 우선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계지원, 자활지원, 주거지원, 탁아지원과 보호시설의 우선 입소권 부여
- 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에게 고소대리권, 대리인 자격부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설치·운영 등

다.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전송을 통한 응급조치의 신청과 경찰관서의 집행을 명시.
- 가해자에 대한 강제처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변호사 선임권, 진술거부권,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고권 부여를 통한 위원과 권리침해 소지를 없앴.
-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리, 결정된 사건은 공소권을 제기할 수 없으나, 가해자가 가정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때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가해자의 교육과 상담 등의 치료를 전담하는 가정보호처분 집행 기관을 법무부장관 산하에 둠

라. 기타

- 범죄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 : 올 정기국회에 제출예정인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한 증인,고발자 보호. 동법의 제정을 전제로 함.

3. 법의 제정을 위한 노력

-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한 법의 제정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주당 법안에 대한 여성단체 등과의 토론을 통해 의견의 충분한 수렴

- 여성관련 법에 대한 국회 여성특위 차원의 논의와 여론수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청회, 토론회 등의 조직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참여한다.
- 경쟁적인 법안의 상정보다는 각 법안에 대한 충분한 의사개진을 통한 조정과 통일에 역점을 두고 여성계와 국회의원의 공동노력에 의한 법 제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임.

가정폭력은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한다

김 중 구(의사, 사당의원 원장)

그동안 경험한 남편에 의한 폭행 피해자들은 많은 공통점이 있다. 우선은 대다수가 만성적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해왔고 오랜 기간동안 남들에게 숨기고 혼자 버텨오다가 도저히 이대로는 못살겠다는 시점에서 병원을 방문한다. 경찰서로 도망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부부싸움 갖고 무얼 그러냐고 그냥 돌려 보낸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면 사사로운 사랑싸움으로 간주하고 출동도 하지 않는다. 또한 병원에 가서 고소하겠다고 상해진단서를 끊어달라 하면 많은 의사들이 가정문제를 갖고 무슨 진단서냐며 잘 끊어주질 않는다고 호소한다.

흔히 부부싸움으로 치부되고 가정내 문제로 돌려버리던 가정폭력문제가 이제라도 사회적문제로 부각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인권운동, 여권운동에 있어 또 하나의 획이다.

아내구타는 부부싸움이 아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오고가는 폭언과 폭행이지만 아내구타는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구타하는 일방적인 폭행이며 그 결과 치명적인 신체의 손상과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시킨다. 신체적 피해에 있어서는사망, 골절, 관절탈구, 안구돌출, 유산, 자상, 고막천공, 화상, 타박상 등 심각하고, 정신적 피해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습관성 구타에 길들여진 아내는 자신감을 잃고, 결정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정신과적 환자가 되게 하고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하며 항상 공포심으로 가득차게 된다. 이렇듯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으로 말미암아 상습적 아내구타는 사회범죄로서 사회문제화되어야 하며 사

회적으로 해결되어져야만 한다.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폭력자는 약 70%가 폭력가정에서 성장했다는 결과에서 폭력의 악순환이 대를 이어 계속되며 인격장애를 갖게 된다. 폭력은 학습되어 내려가며 사회가 아내구타나 자녀구타를 허용하니까 가정폭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폭력을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미화하는 사회, 그리고 남녀평등이 보장되지않는 사회에서 아내구타가 만연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은 또한 사회적 문제로 해결되어야 한다.

가정폭력은 그것을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국한해서는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구타자는 치료에 응하지도 않고 구타를 중단하지도 않는다. 여기에 우선적인 법적 강제조치가 필요하다. 또 희생자를 격리시키고 보호하고 치료하고 때로는 이혼시켜야 하는데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희생자에게는 사회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담소, 피난처, 병원, 경찰, 법조계 등이 이 문제에 대한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법안의 시안은 고소, 고발의 특례를 주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받은 사법경찰관의 조치, 검찰 지휘 하의 수사, 판사의 처분을 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가정폭력 관련 피해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그리고 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가정폭력이 숨겨진 범죄여서 잘 노출이 되지않고, 구타자는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려는 의사가 없고, 있다 해도 치료가 무척 어렵고, 장기간의 구타로 극도로 절망적인 피해자의 정신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가정폭력을 가정내 문제로 두지않고 사회적 문제로 해결하겠다는 범정신이 이 시안에는 잘 담겨져 있다.

그러나 노출이 잘 되지않는다는 점과 무엇보다 일차 예방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제 4조 2항 가정보호위원회의 임무에 집단교육(학교교육, 해당전문직에 대한 교육 등)과 각종 전달매체를 통한 계몽과 홍보를 직접 명시했으면 한다. 제 4조 4항에서 위원회 위촉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 위원이 국무총리 직속 하에 들어가긴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정책수립에 대한 감독과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제 5조의 신고의무는 논란이 많을 수 있으면서 가장 핵심적이고 획기적인 내용이다. 1항은 본인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2항에서 스스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를 담당한 의료인은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되었다 함은 정신지체나 치매, 정신병적인 상태 등에 도달한 것이고 이는 당연히 피해자를 접한 의료인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된다. 신고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있는데 신고 안할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매맞는 아내들이 집을 떠나지 못하거나 이웃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것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이다. 이점을 고려한다면 공포, 불안, 우울 등으로 스스로 신고할 수 없는 자는 본인의 동의 하에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1항의 포괄적 규정으로 해결된다고 본다.

3항에서 신고인은 여하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불법오락실을 신고한 시민이 백주에 테러를 당하는 현실에서 신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알려져서는 안된다는 규정을(사족이 될지 모르겠으나) 넣었으면 한다.

메모

가정폭력방지법 입법제정의 방향

김 재 엽(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잘된 점

1. 기본정신(제1조)
 - 건전한 가정육성
2. 국가책임(제2조)
 - 국가책임 명시(특히 예산, 교육)
3. 정의(제3조)
 -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법조항 삽입이 긍정적
4. 가정보호위원회(제4조)
 - 전문가 활동 노력
5. 수사조사(제12조)
 - 검찰의 역할개선
6. 상담소의 설치(제27조)
 - 설치 및 허가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상담소 난립예방
 - 민간단체에 대한 경비지원에 대한 조항

7. 법안전체

- 피해자 응급하게 보호권익보호 가해자 재발과 폭력 재발생 방지에 주력
- 경찰·검찰·법원 역할이 보다 상세히 규정
- 가정폭력 상담소 등 복지시설 및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음

개선점

1. 가정보호위원회(제4조)

- * 법안 : 정책심의결과 공표
-> 위원회의 정규적인 역할과 기능규명

2. 신고의무(제5조)

- * 법안 : 아동의 교육 ... 교육기관의 대표, 아동, 스스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
-> 아동 나이규정(예:만 14세 이하 혹은 18세 이하). 15세 이상 혹은 성인 중 스스로 정상적인(상황) 판단능력이 현저히 결여 또는 불가능한 자, 신중성과 전문가 의견중시

3. 관할(제8조 1항)

- * 법안 : 관할은 폭력행위자의 행위, 거주지 또는 현재지...
폭력행위자의 소재지 불명시 피해자 보호의 의미 피해자 거주지시

4. 사건발생시의 응급조치(제9조)

- * 법안 : ... 사법경찰관의 동사건에 대한 처분의견...
-> 사회복지전문요원(관계공무원에게 연락) 보고서 작성시 전문의견 참조
-> 현장조치 중 폭력지속 위험성 가해자 연행(임시 퇴거명령과 연계)

< 참고자료 모음 >

◆◆◆◆◆ 참고자료 1 :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관련법 조항

1. 형 법

제224조 (예비음모)

제214, 215조와 제218조 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5조 (미수범)

제306조 내지 제31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4조 (아동학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사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 (모욕)

①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1조 (주거, 신체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50조 (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아동복지법

제18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불구, 기형의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2. 아동에게 구호를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등)

-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제260조 제1항 (폭행), 제276조 제1항 (체포감금), 제283조 제1항 (협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4조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 (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
- ③ 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집단적폭행등)

-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

4. 가사소송법

제43조 (불복)

- ①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 항고만을 할 수 있다.
- ② 항고법원의 재판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 ④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다.
- ⑤ 즉시 항고의 기간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14일로 한다.

5.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의료보호)

- ①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공립병원 보건소를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의료 등을 제공한다.
 1. 성폭력피해자의 보건상담 및 지도.
 2. 성폭력피해의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 정신적 치료

가정폭력 사건 일지

- 1991. 2. 10여년간 장이 파열되고 유산이 되는 등 남편으로부터 극심한 구타를 당해 온 남희순씨 가(32세) 남편을 살해한 사건 발생. (여성신문 91.8.23)
- 1991.12. 어릴 때부터 자신들을 온몸을 빨래줄로 묶고 구타하는 아버지를 두 남매가(14세, 16세) 할머니를 설득해 고소한 사건 발생.(동아91.12.14)
- 1992. 1. 광주에 살던 홍모씨가 3살된 딸이 울자 귀찮다며 목졸라 살해한 후 암매장.(한국 92.1.30)
- 1992. 2. 고부간의 갈등 등으로 결혼 후 11년간 판사인 남편으로부터 구타 당해 온 정 모 여인이 남편을 고소.(경향 92.2.13)
- 1992. 2. 남편의 구타에 못이겨 가출했던 아내를 남편이 독살한 사건.(경향 92.2.26)
- 1992. 2. 처남의 집에서 “왜 내 동생을 학대하느냐”는 처남의 말에 격분해 처남과 조카를 칼로 살해.(동아 92.2.29)
- 1992. 4. 화교인 왕모씨가 아내와 두 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하고 태국으로 도망.(중앙 92.4.8)
- 1992. 4. 대구 안모 의사가 결혼 지참금을 적게 가져 왔다고 아내를 폭행. (한국 92.4.9)
- 1992. 4. 딸인 최모양이 실종 되었다고 조작해 폭력을 피해 도망한 아내와 아이를 찾으려 한 사건.(한겨레 92.4.25)
- 1992. 5. 서울 도봉구 김모 여인(26세) “매 맞으며 사는 것 보다 죽는 게 낫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동아 92.5.9)

- 1992. 5.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어머니에게 밥을 주었다는 이유로 부인을 3층 옥상에서 밀어 떨어뜨림.(동아 92.5.18)
- 1992. 5. 혼수가 적다고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부산의 송모씨를 폭력으로 구속.(한국 92.5.29)
- 1992. 6. 서울 서초동에서 재수생인 아들이 십수년 동안 가족을 폭력의 공포에 떨게 했던 아버지를 살해.(경향 1992.6.29)
- 1992. 7. 평소 아버지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던 신모씨를 아버지와 아내가 살해.(경향 92.7.20)
- 1992. 8. 서울 양모씨가 부부 싸움 끝에 아내를 토막 살해.(동아 92.8.31)
- 1992. 8. 부모의 부부 싸움을 비판한 고교생 외아들 자살.(중앙 92.8.31)
- 1992.10. 12년간 술을 마시고 아내를 구타하다 처갓집이 자신을 푸대접 한다고 장인, 장모, 부인, 딸을 도끼로 살해.(한겨레 92.10.13)
- 1992.11. 부모의 잦은 싸움을 비판해 어린 두자매 농약 먹고 음독 자살.(조선 92.11.4)
- 1992.12. 남편의 구타로 집을 나갔다 들어온 아내를 장인이 있는 자리에서 과도로 질러 죽이고 방안에 신너를 뿌려 불을 지르고 달아난 사건.(92.12.10)
- 1993. 1. 남편의 외도를 만류하는 부인을 공기총으로 쏘 살해한 사건. (한겨레 93.1.1)
- 1993. 2. 20년간 남편에게 구타 당하던 김모 부인이(47세) 이혼을 요구, 합의 이혼서류를 쓰다가 남편에게 수술칼로 찔림.(한국 93.2.17)
- 1993. 2. 14년 동안 남편에게 갖은 수모와 폭행을 당해 오다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던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부산의 이형자씨 사건 발생.(한겨레 93.6.20)
- 1993. 4. 부부싸움을 하던 김모씨가 말다툼 끝에 공기총을 오발하여 부인 입모씨 살해.(동아 93.4.6)
- 1993. 6. 임신한 아내와 전세금 때문에 말다툼을 하던 남편이 아내를 목졸라 살해 후 암매장.(조선 93.6.16)

메모

- 1994. 1. 부산에서 한 여대생이 상습구타자인 아버지를 살해 (한국.1.16)
- 1994. 1. 23년간 가정을 돌보지 않고 상습적으로 구타를 일삼던 남편을 살해한 이순심씨 사건 발생.
- 1995. 3. 18년간 자신과 어머니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아버지를 살해한 전경진사건(조선일보. 3.21)
- 1995. 3. 남편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적학대에 18년간 시달려 온 김명희씨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
- 1995. 6. 13년간 남편으로 부터 극심한 구타와 학대에 시달려온 최현옥씨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
- 1996. 1. 남편의 가혹한 폭행으로 살해된 울산 정순호씨 사건. (울산매일.1.8)
- 1996. 1. 술만 마시면 온 가족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분당의 배은애 사건(문화일보.1.11)
- 1996. 3. 술취한 남편의 폭행을 피하려다 남편을 목졸라 죽인 인천의 양명숙씨 사건(경향신문. 3.8)
- 1996. 4. 10여년간 상습적으로 아내와 남매를 구타해온 남편을 살해한 인천의 이옥자씨 사건(경기일보.4.24)
- 1996. 4. 딸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온 사위를 살해한 이상희할머니 사건. (한겨레신문. 4.16)
- 1996. 7. 11시간 동안 남편의 무차별 구타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간 마산의 구순남 사건(경남매일. 7.15)
- 1996. 8. 10여년간 남편에게 불에 달군 연탄집게, 톱등 공구로 구타당하던 김영순씨가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사건

.....

.....

.....

.....

.....

.....

.....

.....

.....

.....

.....

.....

.....

.....

.....

.....

.....

.....

.....

.....

家庭暴力防止法案

議案 番號	
----------	--

發議年月日: 1996. 9. .

發議者: 李美卿議員

外 人

提案理由

최근 家庭내 暴力狀況은 남편이 상습적으로 아내를 구타하고, 그를 보고 참지 못한 子息들이 殺人을 하는 事件들이 드물지 않게 발생되고 있고, 아버지의 상습적인 暴行에 의해 子息이 사망하는 事件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다달았음.

이처럼 家庭暴力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은 家庭내의 暴力行爲에 대하여 “부부싸움”, “집안일”, “家庭教育”이라하여 公權力이 介入을 回避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웃도 袖手傍觀하여 왔기 때문임.

그러나 家庭내 暴力이 犯罪行爲일 뿐만 아니라, 常習暴行犯의 家庭的 배경이 家庭暴力이란 사실임을 직시하면 家庭暴力이 家庭내의 問題에 그치는 것이 아님.

상습적인 家庭暴力에 대해 被害者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精神的·身體的 疾患에 시달리게 되거나, 또 한편으로는 어쩔수 없는 自救次元의 行爲로서 離婚, 家出, 殺人 등의 극한 행위를 하게 됨으로써, 家庭暴力은 家庭을 破壞할 뿐만 아니라 社會까지 破壞하는 犯罪行爲

이며, 그 씨앗이므로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음. 이에 犯罪行爲인 家庭暴力의 현장에 公權力을 개입시키고, 家庭暴力을 행사한 者에 대하여 家庭保護處分이란 制裁를 가함으로써, 家庭暴力을 豫防하고 방지하여 家庭과 社會를 守護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 가.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건강한 家庭과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家庭暴力의 豫防과 방지를 위한 法令의 정비와 각종 政策을 수립하고, 家庭暴力의 豫防과 방지 사무를 專擔할 機構와 公務員을 두도록 하며, 相談所·被害者保護施設에 대하여 經費를 지원토록 함(案 第3條).
- 나. 被害者가 行爲者에 대하여 家庭保護事件으로 처리를 희망한 때는 이를 一般 刑事事件의 예에 의하지 아니하고 家庭保護事件으로 審理하고, 被害者가 暴力行爲를 告訴하면서 刑事處罰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거나, 동기와 罪質이 刑事處分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家庭保護事件으로 하지 아니함(案 第6條).
- 다. 檢事는 被害者등으로부터 告訴 또는 告發이 있을 때로부터 10日 내 搜查가 종결되도록 지휘함(案 第7條).
- 라. 告訴 또는 告發을 받은 司法警察官吏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警察官職務執行法상 危險發生의 방지 措置 및 犯罪의 豫防과 制

止 措置를 취하여야 하며, 被害者保護를 위하여 퇴거 또는 접근을 금하는 應急措置의 절차를 規定함(案 第8條).

마. 擔當判事는 精神科醫師 · 心理學者 · 社會事業家 · 家庭暴力被害相談所의 相談專門家 기타 專門家에게 調査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事件의 審理에 있어서는 專門家の 의견을 듣도록 함(案 第14條).

바. 擔當判事는 被害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行爲者를 被害者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施設, 病院 기타 療養所에 委託 또는 警察署에 留置할 수 있도록 함(案 第21條).

사. 家庭保護事件의 審理와 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事件送致日로부터 3月내 종료하도록 함(案 第24條).

아. 擔當判事는 證據調査에 의하여 心證을 얻지 못한 때에는 職權으로 被害者를 訊問하여 證據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함(案 第27條).

자. 家庭保護處分の 종류를 接近禁止命令, 養育禁止命令, 引渡命令, 損害賠償命令, 扶養料支給命令, 相談 · 受講命令, 施設委託命令, 社會奉仕命令으로 하고 처분을 併合할 수 있도록 하고, 損害賠償命令, 扶養料支給命令에는 假納命令을 附加할 수 있도록 함(案 第28條 및 第30條).

차. 家庭保護處分の 실시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法務部長官 소속하에 家庭保護所를 둠(案 第41條).

카. 被害者 保護措置로서 生計保護, 自活支援, 住居支援, 託兒支援을 하도록 함(案 第44條 내지 第47條).

- 타.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家庭暴力被害相談所 및 被害者保護施設을 設置·운영하도록 함(案 第48條 및 第50條).
- 파. 家庭保護處分을 받은 者에 대하여 審理·決定된 事件은 公訴를 제기할 수 없으나, 行爲者가 家庭保護處分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刑이 확정 된 때에는 公訴를 提起할 수 있도록 함(案 第59條).
- 하. 審理開始의 決定이 있는 때로부터 그 事件에 대한 家庭保護處分의 決定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그 刑이 확정될 때까지 公訴의 時效는 그 進行이 停止됨(案 第60條).
- 거. 證人·告發者등은 犯罪申告者등保護法에 의하여 보호를 받도록 함(案 第61條).
- 너. 家庭保護處分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함(案 第62條).
- 더. 司法警察官吏로써 正當한 理由없이 第8條第1項의 措置를 취하지 아니한 者 및 正當한 理由없이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召喚에 응하지 아니한 者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함(案 第63條).